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선 입·출항 시 안전확보를 위한 「부산항 크루즈선박 해양안전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회의결과 반영, 용어 혼선에 따른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항법 개정(안 제8조)
- 나. 용어 혼선에 따른 통일(안 제8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준수(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선박입출항법」””을 ““선박입출항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을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을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입출항법」 제37조”를 “선박입출항법 제37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를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를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을 “가목과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여객선”을 “여객선(크루즈선 포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이때,”를 “이때,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크루즈선 포함)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국제여객터미널에”를 “국제여객터미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29-05.487) 사이”를 “129-05.487) 사이”로 한다.

제9조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되며”를 “안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을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선에 한해서”를 “유선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를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을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 대상) -----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 -----.
제3조(정박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박지) ----- ----- “선박입출항법”----- ----- -----.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금지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 -----.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 제10조제1항----- ----- ----- ----- -----.
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지 중 “N-5” 정박지를	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 제37조----- ----- -----

말한다.

② (생략)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해야 한다.

3. 오류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전장·폭·높이, 항세(항만의 상황), 수심 등을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북항 항법) -----

-----.

1. -----

----- 안 된다.

2. -----
-----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 -----

-----.

3. -----

-----.

만,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5. (생략)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u>가목</u>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u>여객선</u>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방파제, 연안여객부두 등의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미터 이내	-- <u>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u> ----- -----. 4. 5. (현행과 같음) 6. ----- ----- ----- ----- -----. <u>가목과 나목</u> ----- --. 가. ----- ----- ----- ----- <u>여</u> <u>객선(크루즈선 포함)</u>----- ----- -----. 나. ----- ----- ----- ----- ----- ----- -----
--	---

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② (생략)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 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

안 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안 되며-----
-----.

④ -----

안 된다.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
 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
 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
 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
 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
 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
 다.)

④ (생략)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
 박입출항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각 목 지
 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
 로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1
 천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3. (생략)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

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유선은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
 입출항법 제2조제5호-----

 ----- 안 된다. -----

 -----.

2.·3. (현행과 같음)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

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 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 고 속도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 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생 략)	법 제17조제3항-----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